

영등포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(취소) 고시

영등포구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행정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지정 철회(취소) 처리하고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23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재개발사업

나. 명 칭 :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

2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-32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2,200.70m²

3. 사업시행자(신탁회사) 지정 철회(취소) 내용

가. 기존 사업시행자의 명칭 : 코리아신탁(주) 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)

나. 철회(취소)사유 :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('25. 12. 23.)에서 신탁계약 해지가 의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전제조건인 신탁계약 관계가 소멸한바, '「행정기본법」 제19조(적법한 처분의 철회)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'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(취소)함